

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

1. 법령개정

-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교사자격* 취득 결격사유** 신설 개정 법률 공포 ('20.12.22.) 및 시행 예정(21.6.23.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)
 - * 정교사(1·2급), 전문상담·보건·영양·사서교사(1·2급), 실기교사, 준교사 (재발급, 부전공 제외)
 - ** 성범죄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

2. 개인정보이용동의

- : 교원자격검정 시,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함께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 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「교원자격검정령」 개정
 - *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
 - ** 개인정보 조회를 원치 않는 학생은 교직지원부에 개인별 요청 (미조회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탈락)

3. 성범죄 경력 확인

- : 교직지원부에서 관할 경찰서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일괄조회
 - * 기관 일괄조회로 개인별 제출 불가

4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

가. 제출서류

- 1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'의사의 진단서' 또는 '검사결과 통보서'
- 2) 1차 검사(TBPE검사 또는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)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'의사의 진단서' 제출 필요

나. 서류 유효 기간

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
*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

** (예시) 24년 6월 3일 신청자의 경우, '23년 6월 3일 이후'부터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

다. 검진방법

- 1) TBPE 검사: 소변검사로 실시(혈액, X-ray 검사 방식도 가능)
- 2)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 시 2차 검사 진행

* 검사 후 결과 나오기까지 3~4일 이상 소요되니 기간 내 제출 할 수 있도록 주의 필요

라. 검사가능 기관

- 1) 한국건강관리협회(교육부 협약기관): [참고 1] 참고
 - 2)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문의 후 진행: 붙임 참고
- * 보건소는 검사 불가 마.

검사비용

- 1) 한국건강관리협회: 6,000원 (건강검진 병행 시 5,000원, 진단서 요청 시+10,000원)
- 2) 기타기관: 약 15,000 ~ 35,000원으로 의료 기관별 상이
- 3) 2차 검사: 약 60,000원 이상으로 기관별 상이

※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'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' 참고